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
의안번호	2072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4. 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나.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(2020.10.16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(규약 제3조)
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
- 나. 임원 확대 구성(규약 제5조)
회장,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
- 다.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(규약 제12조)
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(안건)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 ~15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” 를 “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장 1인과 부회장 1인” 을 “회장 1인과 부회장 2인” 로 한다.

제12조제6항을 신설하고, 제6항에 “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” 는 내용을 포함 한다.

부 칙(2020.10.16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회원의 자격)</p> <p>① <u>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</u>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.</p> <p>단,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</p>	<p>제3조(회원의 자격)</p> <p>① <u>-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-----</u></p> <p>단, -----또는 <u>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미만인</u> 기초자치단체가</p> <p>-----</p>
<p>제5조(임원의 구성 등)</p> <p>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<u>부회장 1인</u>을 둔다.</p>	<p>제5조(임원의 구성 등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 <u>부회장 2인</u>을-----</p>
<p>제12조(실무협의회 운영 등) <신 설></p>	<p>제12조(실무협의회 운영 등)</p> <p>⑥ <u>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</u> 한다.</p>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

2012.11. 7. 제정
2015. 6. 5. 개정
2016. 6.10. 개정
2019. 4.23. 개정
2020.10.16. 개정

제 1 장 >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(이하 「협의회」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원의 자격)

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
단, 외국인주민 1만명 이하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%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
(개정 2020. 10. 16.)

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 승인에 의한다.

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,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 위원이라 한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4 조 (사무소의 위치 등)

- ① 협회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.
- 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회회의와 관련된 협의 · 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 · 관리 한다.

제 2 장 > 임원 및 운영

제 5 조 (임원의 구성 등)

- ① 협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.
(개정 2020. 10. 16.)
-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 (임무)

- ① 회장은 협회회의를 대표하며 협회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,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.(개정 2016. 6. 10.)

제 3 장 > 회의 등

제 8 조 (회의)

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, 개최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정기회의 : 연 2회 이하
- ② 임시회의 :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

제 9 조 (개회 및 의결방법)

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등)

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
- 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
- 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
- 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
- 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
- ⑤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11 조 (사무처리)

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회장이 속한 시 · 구의 업무담당 실 · 과 · 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실무협의회 운영 등)

-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· 운영 한다.
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 · 과 ·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 · 과 · 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.
-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- ⑥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. (개정 2020. 10. 16.)

제 4 장 > 재정

제 13 조 (회비 및 분담금 등)

-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.
- 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회장단체에 납부하고,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.(개정 2015. 6. 5., 2019. 4. 23.)
-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· 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,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제 14 조 (회계관리)

- ①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,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(개정 2019. 4. 23.)
- ② 회장단체 변경 시,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.(신설 2019. 4. 23.)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정)

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(별도규정)

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)

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성동구 · 서대문구 · 강서구 · 구로구, 인천광역시 남동구, 광주광역시 광산구, 경기도 수원시 · 성남시 · 안양시 · 부천시 · 평택시 · 안산시 · 고양시 · 남양주시 · 시흥시 · 용인시 · 김포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포천시, 충청남도 천안시 · 아산시,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.

제 5 조 (회비특례)

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.

부 칙 (2015. 6. 5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6. 10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4. 23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0. 16.)

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현황

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입현황

연번	지역	자치단체명	단체장명	연번	지역	자치단체명	단체장명
1	서울(7)	금천구	유 성 훈	15		고양시	이 재 준
2		구로구	이 성	16		남양주시	조 광 한
3		영등포구	채 현 일	17		시흥시	임 병 택
4		서대문구	문 석 진	18		용인시	백 군 기
5		종로구	김 영 종	19		김포시	정 하 영
6		성동구	정 원 오	20		화성시	서 철 모
7		강서구	노 현 송	21		광주시	이 용 섭
8	인천(1)	남동구	이 강 호	22		포천시	박 윤 국
9	경기(14)	안산시	윤 화 섭	23	충남(2)	천안시	박 상 돈
10		수원시	염 태 영	24		아산시	오 세 현
11		성남시	은 수 미	25	전북(1)	익산시	정 현 울
12		안양시	최 대 호	26	광주(1)	광산구	김 삼 호
13		부천시	장 덕 천	27	경남(1)	김해시	허 성 곤
14		평택시	정 장 선				

임원도시 현황

기 간	년 도	직 위	자치단체	비 고
1, 2기	2012.11~ 2016.11	회 장	경기 안산시	
		부회장	서울 구로구	
3, 4기	2016.11~ 2020.11	회 장	서울 구로구	
		부회장	경기 시흥시	
5기	2020.11~ 2022.11	회 장	경기 시흥시	
		부회장	서울 영등포구	
			경기 수원시	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의 규약) 협의회의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